

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리·운영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  
기구(局)를 신설하여 자율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 
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·확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기구 조정 현황

현 행	개 편	비 고
본청 1실 1단 13과(81담당)	본청 2국 2담당관 13과(80담당)	

### 국 신설

구 분	부 서	비 고
신 설	행정지원국, 경제건설국	+2

○ 행정지원국 : 올림픽기념사업과, 주민복지과, 종합민원과, 재무과,  
허가과, 교육체육과

○ 경제건설국 : 문화관광과, 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, 산림과,  
안전건설과, 도시주택과, 시설관리과

보좌기관(담당관) 설치(명칭변경)

구 분	부 서	비 고
명칭변경	기획감사실 ⇨ 기획담당관	-
	자치행정과 ⇨ 총무담당관	-

□ 과 단위 조정

구 분	부 서	비 고
명칭변경	올림픽기념사업단 ⇒ 올림픽기념사업과	

□ 담당 단위 조정

구 분	담 당	비 고
신 설	내수면	
폐 지	축수산환경	
	지역공동체	

나. 분장사무 대강 조정

현 재			▶	조 정		비고
부서명	담당	업무내용		부서명	담당	
자치행정과	지역공동체	자원봉사		자치행정과	자치행정	
		마을공동체		일자리경제과	일자리정책	
농축산과	축수산환경	축산환경(조사료 등)		농축산과	축산정책	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임(관계법령 발취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19.08.08.~08.13)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규제심사 : 비규제

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 등) ①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본청의 국장, 담당관·과장, 직속기관의 장 및 읍·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#### 제2장 본청

제3조(국의 설치)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, 경제

건설국을 둔다.

제4조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·보좌기관의 설치) ① 부군수 밑에 기획담당관, 총무담당관을 둔다.

② 기획담당관은 기획, 예산, 감사, 군정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.

③ 총무담당관은 인사, 조직, 복무, 교육,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.

제5조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 행정지원국에 올림픽기념사업과, 주민복지과, 종합민원과, 재무과, 허가과, 교육체육과를 둔다.

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
3. 국제행사, 특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평화 관련 사항
5.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6. 아동·보육·청소년·노인·여성가족·의료구호·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
7. 민원, 주민등록, 지적, 토지관리, 새주소에 관한 사항
8.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
9. 지방세,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10.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11. 시설공사 및 물품·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
12.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, 공공청사,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
13.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
14. 건축·농지·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15.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
16.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
17.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18.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
19. 그 밖의 올림픽·복지·민원·세무·인허가·교육·체육행정에  
관한 사항

제6조(경제건설국에 두는 과) ①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, 일자리경제과, 환경위생과, 산림과, 안전건설과, 도시주택과, 시설관리과를 둔다.

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
3.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4.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,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
5.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
6.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
7.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8.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9.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0. 물가안정, 소비자보호, 기업유치, 공장설립,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
11. 기업유치, 기업지원에 지원에 관한 사항
12. 전기·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
13.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14.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
15.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·운반에 관한 사항
16.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
17. 자연휴양림, 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8.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,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
19. 도시기본계획수립,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0. 도시개발, 도시재생,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21.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, 운수,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
22. 도로, 교량,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3. 자연재해·풍수해 관련 재난관리,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
24.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5.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
26. 그 밖의 문화관광·경제·일자리·환경·산림·안전·재난방재·건설행정·도시개발·경관·시설관리에 관한 사항

### 제3장 직속기관

#### 제1절 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·보건진료소

제7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 한다)을,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원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제8조(의료원장 등) ① 의료원에 원장 및 보건사업과장, 진료지원과장을 두며, 보건지소에 지소장,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,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.

② 원장은 군수의, 과장, 지소장, 센터장과 보건진료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9조(소관사무) ① 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

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

## 제2절 농업기술센터

제1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·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도록 군에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에 둔다.

제11조(소장 등) 센터에 소장 및 농축산과장·유통원예과장·기술지원과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,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2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### 1. 농축산과

가.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

나.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

다.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

라.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

마.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

바. 낙농초지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

사. 농업·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

### 2. 유통원예과

가.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

나.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

다. 농산물 가공사업에 관한 업무

라.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

마.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

### 3. 기술지원과

가.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

나.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

다. 지역특화작물 개발

라. 영농기계화,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

제13조(지소의 설치)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,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사업소

제14조(설치)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(이하 “사업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사업소의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.

제15조(소장)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6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상·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·시행
2. 상·하수도시설,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
3. 상·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
4. 상·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
5.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
6. 상·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
7. 지하수에 관한 업무
8. 그 밖에 상·하수도,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

## 제5장 읍·면

제17조(설치)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·제6항에 따라 읍·면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·면의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직무) 읍·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등록·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 발급, 이·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9조(읍·면장) 읍·면에는 읍·면장을 두며, 읍·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## 제6장 출장소

제20조(설치) ①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림면계촌출장소(이하 “출장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

제21조(소장)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 및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2조(소관사무) 출장소장은 제18조의 직무 중 가족관계등록·주민등록 업무 및 민원서류 발급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·과·단장,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,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·과·단장,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, 과장, 단장,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

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 평창군 브랜드·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 
항 제2호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하며, 제6조제4항 각  
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감사실장, 자치행정과장”을 “기획담당관, 총무  
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③ 평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 
조 제4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하며, 제8조제2항  
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, “자치행정  
과장”을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⑤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, “자치행정과장”  
을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, “자치행정과장”

을 “총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⑦ 평창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, “자치행정과장” 을 “총무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⑧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⑨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⑩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⑪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⑫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⑬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 을 “기획담당관” 으로 한다.

⑭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⑮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⑯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각각 “총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⑰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⑱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⑲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8조제1호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⑳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㉑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감사실장”을 “기획담당관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보건의료원·보건지소·건강생활지원센터·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 
(제7조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평창군보건의료원	평창읍 노성로 11	평창군일원
미탄보건지소	미탄면 미탄문화길 37	미탄면 일원
방림보건지소	방림면 방림1길 14	방림면 일원
대화보건지소	대화면 남산1길 36	대화면 일원
봉평보건지소	봉평면 기풍8길 32-4	봉평면 일원
용평보건지소	용평면 갈정지길 8	용평면 일원
대관령보건지소	대관령면 대관령로 63	대관령면 일원
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	진부면 하진부리 251-1	평창군 일원
고길보건진료소	평창읍 고길천4길 13-15	고길리, 노론리, 조동리, 이곡리, 지동리, 상리
다수보건진료소	평창읍 숫돌고개길 16	임하리, 뇌운리, 계장리, 하일리, 다수리, 원당리
도돈보건진료소	평창읍 평창강로 854	마지1,2리, 천동리, 도돈리, 응암리, 대상리, 대하리
계촌보건진료소	방림면 운지로 294-14	계촌1,2,3,4,5,6리, 운교1,2리
하안미보건진료소	대화면 동천길 91	하안미2,3,4,5,6리
개수보건진료소	대화면 금당계곡로 832	개수1,2리, 상안미 1,2리
신리보건진료소	대화면 고토곡길 4	신1,2,3,4,5리
면온보건진료소	봉평면 진조길 14	면온1,2리, 진조리, 유포2리, 무이2리
등매보건진료소	봉평면 금당계곡로 1777-9	유포1,3리, 재산2리, 백옥포1,2리
속사보건진료소	용평면 양지길 10	속사1,2리, 노동리, 이목정1,2리
두일보건진료소	진부면 방아다리로 338-3	두일리, 척천리, 탑동리, 상진부2리
거문보건진료소	진부면 거문길 13-3	상월오개1,2리, 신기리, 거문리, 마평1리, 봉산리
수항보건진료소	진부면 오대천로 924	마평2리, 화의리, 장전리, 막동리, 수항리
유천보건진료소	대관령면 전나무길 8	유천1,2,3리, 병내리, 간평1리
용산보건진료소	대관령면 큰터길 21	용산1,2리, 수하리, 차항1리

[별표 2]

출장소 위치 및 관할구역(제20조 관련)

출장소명	위 치	관할구역
방림면 계촌출장소	평창군 방림면 계촌길 101	방림면 계촌1,2,3,4,5,6리 운교리 1,2,3리 일원

# 관계 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